

보도자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- ▶ 보도일시: 2014.7.14.(월) 석간
<인터넷 7.14.(월) 09:00이후>
- ▶ 총 5 쪽

❖ 근로개선정책과장 박 광 일
사무관 이 지 윤

☎ 044-202-7529, 010-6536-7730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임금체불·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

- 14일(월), 「근로기준법」·「최저임금법」 개정안 입법예고 -

- 고용노동부는 7.14.(월) 고의·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·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.
- 이번 법률안은 금년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 의 후속조치로
 - 실효성 있는 제재방식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.
-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.

<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>

- ㉠ 고의·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가금 부여
- 임금체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27만명, 체불금액이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다.

-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 하고 있으나, 고의·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제재효과가 낮고, 근로자가 장기간의 상습적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.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·상습적*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고의·상습 체불 관행을 근절하고,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였다.
 - * 고의성: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·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
 - * 상습성: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

②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제 적용

- 지금까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·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, 재직근로자는 제외되어 있었다.
- 이러한 점이 재직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임금체불 상태가 지속되고, 일부 업종에서는 관행적으로 유보임금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.
 - * '13년 체불내역 확정 사건 중 3개월 이상 체불사건은 체불근로자 기준으로 16.0%, 체불금액 기준으로 42.3% 차지

지연이자제

임금 및 퇴직금 체불시 지연이자(현재 퇴직근로자 연 20%)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('07.7월 시행)
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. 단,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율은 퇴직근로자와 차등 적용하되, 임금체불 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*한다.
 - * 6개월 미만: 5% → 6개월~1년 미만: 10% → 1년 이상: 20%

- 이를 통해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지연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장기간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.

③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제공 근거 마련

-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*를 하고 있으나, 대상이 협소하고 제재방식이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. 현재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 시 임금체불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,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어 명단공개 대상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.

* (명단공개 대상) 유죄판결 2회 이상,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
 (신용제재 대상) 유죄판결 2회 이상,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

- 이에 국가 및 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 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 제공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다.

* (정보제공 대상) 유죄판결 1회 이상, 1년 이내 체불총액 1천만원 이상

- 이를 통해 공공 발주공사 등의 종합심사낙찰제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
④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시 제재수단 개선

-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벌칙 집행 상 복잡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 효과가 낮아서 서면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.

* 서면근로계약 비율: ('11년) 50.6% → ('12년) 53.6% → ('13년) 55.4%

- 이에 신속한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단을 개선하였다.

*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의 경우,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조치기준 강화('14.8월 시행 예정)

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

- 아울러 정부 3.0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자,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세청, 보건복지부(국민건강보험공단) 등에게 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-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, 세금 체납사업장 등을 파악하여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선정하여 '체불예방' 및 '지원제도' 안내, 청산지도, 감독 등 '임금체불 예방·감시시스템'을 구축함으로써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최저임금법 개정안 주요내용>

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도입

-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,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었다. 이에 현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,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.

* '13년 감독 사업장 13,280개소 중 최저임금 미달 1,044건, 사법처리 12건

-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“즉시 과태료 부과 → 시정시 50% 내에서 과태료 감경 → 2년간 재위반시 사법처리” 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.

② 단순노무종사자의 최저임금 수습 감액 제외

-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%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. 이는 숙련형성 기간 중 정상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.
-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알바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,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.
- 이에 따라 1~2주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 노무종사자*는 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 감액규정 악용사례가 많은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, 주유원, 패스트푸드 종사자 등의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였다.

*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(단순노무종사자) 해당 직종

-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“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산업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위반 관행이 만연한 비정상적인 상황”이라며,
- “이번 제도 개선은 ‘고의·상습’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,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것이 핵심이며, 우리 노동시장이 기본부터 확실히 지키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이지윤사무관(☎ 044-202-752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